

국제 보건복지 정책동향 2

OECD 국가들의 가족정책 유형화와 한국에의 함의

-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한국을 중심으로 -

*Family policy regimes in OECD countries and its implications for Korea:
with reference to Norway, Austria, Italy, New Zealand and Korea*

고경환 한국보건사회연구원 연구위원

1. 들어감

우리나라는 법으로 명확하게 규정된 가족정책은 없지만, 역사적 고찰을 통해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다양한 정책들을 살펴볼 수 있다. 최초의 가족정책이 전후 폐허속에서 과부와 고아 중심의 부녀복지였다면, 1970년대는 가족계획, 1980년대는 인구정책으로 그 중심 사업이 전환되었다. 이후 1989년 모자복지법이 제정되면서 요보호가족을 위한 실질적인 법체계가 구축되었고, 이로 인해 가족정책과 관련된 사회보장법을 개선하게 되었다.

최근 출산 쇼크(2005년, 출산율 1.08명)는 저출산고령사회에 대한 사회적 관심을 높였고, 노동력 감소와 사회복지지출의 증가에 대한 우려

를 초래하여 저출산고령사회기본법 제정(2005년)과 저출산고령사회기본계획(새로마지플랜, 2006-2010)의 수립으로 연계되는 등¹⁾ 출산장려정책이 가족정책을 대신하고 있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²⁾. 뿐만 아니라 여성의 노동시장 진출이 증가함에 따라 여성고용정책 역시 가족정책의 성격을 갖고 있으며, 맞벌이 가구의 증가와 육아에 대한 사회적 관심의 증가로 자녀 양육 정책 또한 가족정책으로 간주되고 있다. 즉 한국에서 가족정책은 때로 출산장려정책(이에 관한 대표적인 연구로는 이삼식 외, 2007; 신윤정 외, 2008)의 일부이며, 양육지원정책(신윤정 외, 2007; 서문희 외, 2004)과 중복되거나 여성고용정책(김혜원 외, 2007)의 수단으로 규정되는 경향이 있다³⁾.

- 1) 이삼식·유계숙·박종서·이성용·조영태, 『최근의 출산율 증가원인 분석 및 중기 출산율 예측』, 보건복지가족부·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2) 이를 반영하듯이 보건복지가족부 홈페이지에는 저출산정책으로 연령별 자녀에 대한 지원, 임신부를 위한 지원, 일하는 부모의 출산양육지원, 다자녀 가정에 대한 지원, 다문화 가정에 대한 지원 등이 포함.
3) 이들 국가들을 대상으로 하는 연구로는 서문희·김미숙·박세경·최은영·임정기, 『여성 사회활동 증진을 위한 보육환경 개선방안 연구』, 2004; 신윤정·박세경·최성은·김필숙·최은영, 『양육지원정책의 향후 발전 방향-국제 비교를 중심으로』, 2007; 김혜원·

이렇듯 사회적으로 합의된 정의와 범위조차 애매하기 때문에 먼저 가족정책에 대한 개념부터 규정할 필요가 있다. 본 연구에서 가족정책이라 함은 가족 전체를 대상으로 하는 정책으로 소득보장제도, 일-가족양립제도, 유아교육·보육서비스제도가 포함된다. 이는 OECD SOCX Database의 가족급여 지출 항목의 범위와 동일하다.

가족정책과 관련된 대부분의 선행 연구들은 선진국의 사례들을 소개하고 각국의 제도들이 한국에 주는 함의를 도출하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그러나 각국의 가족정책의 다양한 제도들을 일-가족 양립지원정책 혹은 출산장려정책 등으로 단편적으로 소개하고 지나치게 영국, 스웨덴, 독일, 프랑스 등의 국가에 의존하는 한계를 갖고 있다. 이는 물론 영어권 국가들의 자료가 구하기 쉽고 가독성이 좋을 뿐만 아니라 비영어권 국가의 자료는 2차 문헌정보에 의존할 수밖에 없는 한계가 있기 때문이다. 또 다른 이유는 복지국가에 대한 다양한 유형화 논의가 주로 1980년 이후의 복지국가 확대기에 초점을 맞춘 노동시장 중심의 유형화라는 데 있다. 이는 1990년대 이후 새롭게 등장한 세계화와 그 영향으로 인한 복지국가들의 침체 혹은 조정 국면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어 최근의 복지국가 동향을 살펴보는 데 한계를 갖고 있다. 뿐만 아니라 가족을 대상으로 하는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대한 논의는 특히 국내에서 그 역사가 짧다.

본 연구는 OECD SOCX Database의 가족급여 지출 자료에 근거하여 OECD 회원국들의 가

족정책을 비교분석하는 데 목적을 두었다. 이를 위해 먼저 SOCX Database의 가족급여 지출의 하위항목들을 살펴보고, 2003년 자료를 이용하여 SPSS 12.0으로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런 다음 각 클러스터를 대표하는 국가들의 가족정책 범위를 살펴보기 위해 Excel을 이용하여 방사형 그래프를 작성하였다. 마지막으로 각국의 가족정책 하위 제도들을 분석하였다.

본 연구는 가족정책을 중심으로 국가들을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국가들에 대한 상세한 분석을 제공하였다는 점에서 첫 번째 의의를 찾을 수 있다. 즉 선진국의 사례를 설명하고 한국에의 도입이 적당한가 여부를 설명하는 데서 벗어나 클러스터 분석을 통해 유형화하고 각 유형별 사례 국가들의 제도를 살펴봄으로써 한국 가족정책의 방향성을 진단하고 함의를 도출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 두 번째 의의는 대부분의 복지국가 유형화 논의가 1980년대를 중심으로 이루어져 최근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는 개혁의 산물을 살펴보기 어려운 한계를 가진데 반해 분석의 시점을 2000년대 이후로 정함으로써 각국 가족정책의 최근 동향을 파악하는 데 유용하다는 것이다. 다음으로 본 연구는 일반적으로 소개되는 주요 선진국(스웨덴, 영국, 프랑스, 독일 등)의 사례에서 벗어나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뉴질랜드 등의 가족정책을 살펴봄으로써 보다 다양한 정책적 함의를 도출하는 데 기여할 수 있을 것이다.

김경희·이주희·최은영, 『OECD 주요국의 여성고용정책 연구: 영국·캐나다·스웨덴·덴마크』, 2007 등이 있음.

2. 분석 틀

각국의 가족정책에 대한 정의와 개념, 기능과 역할의 다양성 때문에 OECD 국가들을 비교하는 단일한 분석틀을 갖는 것은 상당히 어려운 일이다. 카머만과 칸(Kammerman & Kahn, 1978)⁴⁾이 지적하듯이 일반적으로 가족정책은 소득재분배 기능을 통한 가족의 소득 보장에 초점을 맞추지만, 때로 인구 정책의 일환으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한 수단이 되기도 하며, 때로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유지하기 위한 여성정책과 결합한다는 것을 유념할 필요가 있다

이와 유사하게 헤를트와 카우프만(1982)⁵⁾은 국가가 가족에 개입하는 정책의 동기를 인구정책적 동기와 사회정책적 동기, 가족제도적 동기, 해방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즉 인구정책적 동기는 출산장려정책으로, 사회정책적 동기는 유자녀가족의 소득보장제도로, 가족제도적 동기는 모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으로, 해방적 동기는 돌봄노동의 사회화로 구분하였다. 그러나 헤를트와 카우프만의 분석틀은 두 가지 한계를 가진다. 먼저 모성의 돌봄 노동에 대한 지원과 돌봄 노동의 사회화를 구분한다는 것 자체가 모호하다. 특히 OECD SOCX 데이터에서는 이러한 지출을 항목별로 구분하는 것은 불가능

하다.

둘째 돌봄 노동의 사회화가 해방적 동기를 갖는다는 것은 페미니스트 시각에서 중요하게 다루어지는 부분이다. 코르피(2000)⁶⁾는 0~2세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 이용율과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교육 및 보육시설 이용율을 구분하고 있다. 그 이유는 영아에 대한 기관 지원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기 위한 것이며, 유아(3~5세)에 대한 교육비 지원은 전통적인 가족(남성 생계부양자, 여성 돌봄 제공자)을 지원하기 때문이다. 한편 에스핑 안델센 외(2002)⁷⁾는 인적자원에 대한 투자의 차원에서 아동투자는 지속가능한 사회를 위해 정책적 동기를 가진다고 지적하고 있다. 이러한 선행연구들을 고려하여 본 연구에서는 보육에 대한 지출과 교육에 대한 지출을 구분하고, 보육에 대한 헌신은 인구정책적동기로, 유아교육에 대한 지출은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적 동기로 구분하였다. 대부분의 국가들에서 보육과 유아교육이 연령을 기준으로 구분되지만 연령 구분 없이 보육으로 일원화되어 있거나 우리나라처럼 부처별로 이원화되어 있는 경우도 있다.

본 연구의 분석틀은 헤를트와 카우프만의 가족정책에 대한 동기 중 해방적 동기를 대신하여 에스핑 안델센 외가 주장한 인적투자의 동기를 포함한 것이다. 즉 하나의 축(세로축)은 국가에

서 정책적으로 선호하는 가족의 유형을 보여주는 것으로 전통적인 1인 소득자 가구와 2인 소득자 가구에 대한 지지를 나타낸다. 이는 헤를트와 카우프만이 사회정책적 동기와 가족제도적 동기라고 부르는 것이다. 다른 축(가로축)은 영유아에 대한 유아교육·보육(Early Child Education & Care, ECEC)서비스의 선호를 보여주는 것으로 일반적인 보육서비스와 인적자본 투자적 개념의 유아교육에 대한 선호를 나타낸다. 취학전 아동에 대한 보육서비스의 선호는 헤를트와 카우프만의 인구정책적 동기와 연관되며, 일반적으로 3~5세를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서비스에 대한 선호는 에스핑 안델센의 인적자본에 대한 투자적 동기와 연관된다⁸⁾.

3. OECD 가족급여 지출

1) 지출추이

OECD SOCX Database에서 가족(Family, SOCX Category No. 5)부문은 가족을 지원하는 지출을 뜻한다. 이 지출은 대개 자녀를 양육하거나 혹은 다른 피부양자를 지원하는 것에 연관된 비용과 관련있다⁹⁾. 또한 가족부문은 급여의 종류로는 현금급여와 현물급여로 구분되며, 항목으로는 가족수당, 육아휴직, 기타 현금급여, 아동주간보호/가정봉사서비스, 기타현물급여로 구분한다(고경환 외, 『2006년도 한국의 사회

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 2008).

<표 1>은 1980년 이래 25년간 주요 국가들의 가족급여 지출의 변화를 보여준다. 먼저 1980년대에는 오스트리아의 가족급여 수준이 가장 높고, 뉴질랜드, 노르웨이 순으로 나타났다. 오스트리아의 높은 지출 수준은 전후 유럽대륙 국가 특유의 남성생계부양자 모델에 입각한 보편적인 가족수당 때문이다. 그러나 세계적인 경제침체와 저출산 고령사회의 영향으로 복지재정에 대한 압력이 높아지고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가 증가하면서 과거의 제도는 현재의 사회적 상황과 갈등을 빚고 있다. 즉 사회적으로는 전통적인 가족중심 문화가 팽배해 가족 내 여성의 돌봄 노동이 당연한 것으로 여겨지나 정부는 고용정책과 조세정책을 통해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촉진하고 있다. 이러한 결과 2005년 오스트리아의 가족지출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감소하였다.

오스트리아를 제외한 뉴질랜드, 노르웨이, 이탈리아, 한국에서는 가족 급여의 지출이 증가하였다. 그러나 국가별 차이는 두드러진다. 먼저 뉴질랜드는 1980년대에 높은 수준의 가족급여 지출을 나타냈으나 최근까지도 뚜렷한 증가나 감소 없이 그 수준을 유지하고 있다. 그 이유는 조세급여를 통한 소득보장제도 등의 확대에도 불구하고 소득수준에 따른 엄격한 대상선정 기준과 낮은 급여 수준 때문에 그 지출수준이 크게 증가하지 않았기 때문이다.

4) Kammerman & Kahn, *Family Policy: Government and Families in Fourteen Countries*, New York, Columbia University Press, 1978.

5) Herlth & Kaufmann, "Zur Einfuehrung-Familiale Probleme und sozialpolitische Intervention", *Staatliche Sozialpolitik und Familie*, R. Oldenburg Verlag, Munchen, 1982, pp. 1~22.

6) Korpi, "Faces of Inequality: Gender, Class, and Patterns of Inequalities in Different Types of Welfare State," *Social Politics*, Oxford University Press, 2000, pp. 139~148.

7) Esping-Andersen et al., *Why we need a new welfare state*, Oxford, University Press, 2002.

8) 이에 대한 상세한 논의는 고경환·장영식·강지원, 『2006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8. 참조.

9)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8.

노르웨이는 북유럽 국가들 중 가장 낮은 수준의 복지를 제공하고 있으며, 공공보육시설의 확대 대신 부모의 유아교육·보육비를 지원하는 시장주의 방식을 채택함으로써 북유럽 국가들 중 다소 잔여적인 특징을 갖고 있다. 남유럽 국가를 대표하는 이탈리아는 전통적으로 가족책임주의가 강하다. 즉 가족에 대한 복지의 책임은 일차적으로 가족에게 있어 소득보장제도가 미흡하며, 가족 내 돌봄노동의 책임은 여성에게 있어 영아에 대한 보육보다 유아교육에 대한 국가적 헌신이 두드러진다. 그러나 최근 가족에 대한 사회적 투자가 두드러지며 아동과 가족에 대한 지출이 증가하고 있는 추세다. 마지막으로 1990년 이후에야 비로소 통계작성이 시작된 한국은 이들 국가 중 지출수준은 가장 낮지만 가장 높은 증가율(300%)을 보이고 있다.

2) 가족급여 지출의 항목 비교

각국의 가족급여 지출의 추이는 시간의 흐름에 따른 양적인 변화를 보여주는 하나 각국의 가족급여를 한 시점에서 비교할 때 제도적인 측면을 설명하는 데는 한계가 있다. 즉 국가간 가족정책을 비교하기 위해서는 가족정책에 포함되는 다양한 제도들에 대한 자료들이 필요하다. 왜냐하면 특정 국가에서는 가족급여에 대한 지출의 높은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을 노인 소득보장을 위한 제도로 운영하거나 낮은 지출 수준에도 불구하고 그 대부분을 직접적인 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해 사용하고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가족정책을 살펴보기 위해서 본 연구에서 사용하는 OECD SOCX 데이터베이스의 가족급여 지출 항목을 먼저 고려할 필요가 있다.

OECD 국가별 데이터는 각국의 담당자 (correspondent or contactor)를 통해 자기보고의 형태로 취합되고 있다. 특정 국가에 있는 제도가 다른 국가에는 없기도 하고, 국가마다 제도에 대한 명칭이 다르기도 하며, 특정 국가에서 다양한 재원을 통해 이루어진 제도들이 다른 국가에서는 단일 재원으로 이루어지기도 한다. 이를 표준화하기 위해 OECD에서는 각 항목아래에 다양한 하위항목들을 제시(예를 들면, 현금급여, 현물급여 등)하고 각국의 담당자가 하위항목별로 제도가 포함되는 영역에 데이터를

작성하도록 하고 있다. 즉 세(細)항목에 있어서는 각국의 상이성을 최대한 반영하되, 중(中)항목에 있어서는 각국의 비교가 용이하도록 표준화시킨 것이다.

먼저 가족수당과 관련된 하위항목들은 <표 2>와 같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가족과 아동의 수에 따라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보편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에 유럽대륙국가인 오스트리아는 동일한 아동급여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2>와 같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는 부모의 소득수준에 상관없이 가족과 아동의 수에 따라 소득보장을 제공하는 보편주의 성격을 띠고 있다. 반면에 유럽대륙국가인 오스트리아는 동일한 아동급여가 부모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표 2. 주요국가의 가족수당 하위 항목

하 위 항 목		
노르웨이	- family allowances - family allowances for children	- 가족수당 - 아동에 대한 가족수당
오스트리아	- family allowances - child benefit (tax system) - child benefit (Offenliche Hand) - child benefit (Sozialleistungen der Lander) - alimony supplements (Familienlastenausgleichsfonds) - family support (egalitarian benefits) - family allowance (Lander) (non means-tested)	- 가족수당 - 아동수당(조세) - 아동수당(공적 기금) - 아동수당(공공부조) - 이혼부양수당(가족후원금) - 가족지원금(평등급여) - 가족수당(부의 비자산조사)
이탈리아	- family allowances - general scheme for employees - civil servants - other occupational schemes for employees family or child allowances (비자산조사) - family or child allowances (자산조사) - employees: welfare payments	- 가족수당 - 피고용인 대상 가족수당 - 공무원에 대한 가족수당 - 기타직업의 피고용인 대상 - 가족 혹은 아동수당(비자산조사) - 가족 혹은 아동수당(자산조사) - 피고용인: 복지지불금
뉴질랜드	- family allowances - family benefit - family support tax credit - family care - family benefit capitalization - family tax credit - child tax credit - parental tax credit	- 가족수당 - 가족급여 - 가족지원세액공제 - 가족부양지원금 - 가족급여수익형 - 가족세액공제 - 아동세액공제 - 출산세액공제
한국	- family allowances - single parent families - patriots and veteran pension, etc.	- 가족수당 - 한부모 가족 - 국가보훈, 퇴역군인연금 등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내부자료, 2008.

표 1. 가족급여 추이: 1980~2005

	1980	1985	1990	1995	2000	2005	증가율 (2005/1980×100)
노르웨이	1.8	1.9	2.7	3.5	3.0	2.8	156
오스트리아	3.2	2.8	2.6	3.1	2.8	2.8	88
이탈리아	1.1	0.9	0.8	0.6	1.2	1.3	118
뉴질랜드	2.2	2.3	2.6	2.3	2.8	2.6	118
한국			0	0.1	0.1	0.3	300

주: 한국의 증가율은 기준연도가 1995년임.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2008.

다른 재원으로 제공된다. 또한 자유주의 국가인 뉴질랜드는 직접적인 현금 이전(예, 수당)을 통한 소득보장보다는 조세(예, tax credit)를 이용한 간접적인 현금 이전이 더 강한 특징을 갖고 있다.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화에 포함되지는 않았지만 이탈리아는 오스트리아와 유사하게 직업(피고용인, 공무원, 기타 직업)에 소득보장제도가 구분되고, 자산조사와 비자산조사의 제도가 구분된다. 한국은 한부모 가족 등 일부 대상자에게만 가족수당이 존재한다.

기존의 복지국가 유형별 특징은 <표 3>과 같이 육아휴직 관련 하위항목에서도 나타난다. 먼저 노르웨이는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소요되는 비용과 급여를 구분하여 소득수준과 기여에 상관없이 제공된다. 또한 출산을 장려하기 위해서 출산으로 인한 소득 보전과 출산지원금을 제공하고 있다. 이는 자유주의 국가인 뉴질랜드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나는데, 일-가족양립지원과 출산장려에 대한 뉴질랜드의 강한 헌신은 높은 출산율과도 연관이 있다¹⁰⁾.

오스트리아 역시 출산 및 육아휴직과 급여를 구분해서 제공하고 있지만 소득자의 노동시장 지위에 따른 재원에 차이가 있다. 즉 근로자의 사회경제적 지위에 따라 기업보조를 통한 육아휴직과 자산조사에 의한 육아휴직 급여의 재원이 다르다. 또한 오스트리아 등의 유럽대륙 국가에서는 가족연대기금을 운영하여 이 재원에서 영유아에 대한 지원과 육아휴직을 지원하고 있는 것도 특징적이다. 반면에 이탈리아에서는 출산 및 육아휴직제도는 있으나 출산에 대한 소득보장만 존재할 뿐 육아에 대해서는 전적으로 가족의 책임이다.

원 항목으로 구분된다. 이와 유사하게 한국은 아동보육이 보육시설과 유치원으로 구분되지만, 가정봉사서비스는 나타나지 않는다. 이는 가정 내 보육에 대한 지원이 전혀 없다는 것을 뜻한다. 이탈리아 역시 보육시설과 유치원 항목이 구분되어 나타나지만 어린 영아들을 대상으로 하는 보육시설과 다른 복지서비스에 지출하는 항목도 있다. 그러나 가정봉사서비스에 대한 지출 항목은 없어 한국과 유사한 것으로 나타난다.

오스트리아와 뉴질랜드에서는 유치원에 대한 항목이 두드러지게 나타난다는 공통점을 갖고 있다. 특히 오스트리아는 유치원에 대한 지원이 주정부에서도 이루어지며, 가정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원은 주정부 혹은 자산조사에 기초하여 제한적으로 제공된다. 또한 가정봉사서비스는 자산조사에 의한 서비스와 중산층을 위한 서비스가 모두 제공된다. 반면에 뉴질랜드에서는 보육시설에 대한 항목은 없고 유치원 이용에 대한 보조금과 지원금을 구분해서 지출하는 것이 특징이다. 또한 보육시설이용에 대한 보조와 방과후 보육시설 이용에 대한 지출항목이 나타난다.

한국은 출산 및 육아휴직관련 지출 항목이 매우 단조로운데 그 내용조차 보편적인 것이 아니라 고용보험의 단일재원에서 제공된다는 특징을 보여준다. 즉 고용보험 미가입자의 경우 출산 및 육아휴직으로 인한 수당은 받을 수 없다.

마지막으로 아동주간보호서비스 및 가정봉사서비스 관련 하위항목들은 <표 4>와 같다. 현재 SOCX 데이터에서는 아동보육(childcare)과 가정봉사서비스(home-help service)가 동일한 항목으로 제공되고 있는데, 그 내용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보육은 자녀의 육아와 관련된 시설을 이용하는 것을 뜻하고 가정봉사서비스는 가정 내에서 이루어지는 보육에 대한 서비스 지원을 뜻한다. 또한 아동보육은 다시 보육시설과 유아교육기관으로 구분된다.

노르웨이에서는 아동보육과 가정봉사서비스가 구분되고, 아동보육은 다시 보육시설과 유치

표 3. 주요 국가의 육아휴직 하위항목

	하 위 항 목	
노르웨이	-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benefits - income maintenance in the event of childbirth - birth grant	- 출산 및 육아휴직 -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 출산시 소득보장 - 출산지원금
오스트리아	- maternity/ parental leave - maternity/ parental leave benefits - maternity/ parental leave benefits(Betriebshilfe-gesetz) - maternity/ parental leave benefits (means-tested) - aid at child birth - parental leave for employees - parental leave (Familien-lastenaus-gleichfonds)	- 출산 및 육아휴직 -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기업보조) -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자산조사) - 출산보조금 - 피고용인에 대한 육아휴직 - 육아휴직(가족연대기금)
이탈리아	-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 income in the event of child birth(non means-tested) - income in the event of child birth(means-tested)	- 출산 및 육아휴직 - 출산시 소득보장(비자산조사) - 출산시 소득보장(자산조사)
뉴질랜드	-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benefits - income maintenance in the event of childbirth - birth grant	- 출산 및 육아휴직 - 출산 및 육아휴직 급여 - 출산시 소득보장 - 출산장려금
한국	- maternity and parental leave - prenatal/postnatal leave allowance(Employment Insurance) - maternity leave allowances(Employment Insurance)	- 출산 및 육아휴직 - 산후 및 육아휴직수당(고용보험) - 출산휴가수당(고용보험)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내부자료, 2008.

4. OECD 국가의 가족정책 유형화

OECD 23개 회원국의 가족정책을 유형화하기 위해서 2003년 OECD SOCX 데이터의 가족

10) OECD, 『Babies and Bosses-A synthesis of findings for OECD countries』, 2007.에 따르면 뉴질랜드의 출산율은 2.0명(2005)이며, 이 수치는 멕시코, 터키, 아이슬란드, 미국 다음으로 높음.

표 4. 주요국가의 유아교육·보육 하위항목

하 위 항 목	
노르웨이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y care/home-help services - child day care institutions - child care (pre-primary education) - home help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가정보육서비스 - 보육시설 - 보육(유치원) - 가정보육
오스트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y care/home-help services - child day care(Kindergarten) - child day care (*)(Sozialleistungen der Lander) - assistance for pupils and students - family accommodation benefits(Sozialleistungen der Lander) - accommodation benefits(means-tested) - home-help - home-help(means-tested)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가정보육서비스 - 보육(유치원) - 보육(유치원)(주보조금) - 학생들에 대한 보조 - 가정보육시설급여(주보조금) - 시설 급여(자산조사) - 가정보육 서비스 - 가정보육서비스(자산조사)
이탈리아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y care/home-help services - day nurseries - other welfare services - child care(pre-primary education) - child day care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가정보육서비스 - 아동보육보조 - 방과후아동보육 - 유치원 교육비 보조 - 유치원 교육비 지원
뉴질랜드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y care/home-help services - child care assistance - out-of school care - early childhood education subsidies - early childhood education grants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보육/가정보육서비스 - 보육 - 보육(유치원)
한국	<ul style="list-style-type: none"> - day care/home-help services - child care - child care(pre-primary education)

자료: OECD, Social Expenditure Database 내부자료, 2008.

급여지출에 대해 클러스터 분석을 실시하였다. 그러나 실제로 클러스터 분석에서 유효하게 나타나는 국가들은 12개 국가로 제한되었다. 이는 데이터의 부족으로 미국, 일본, 독일 등의 주요 국가들이 제외되었기 때문이다.

클러스터 분석의 결과는 [그림 1]과 같다. 먼저 스웨덴-노르웨이의 북유럽국가군 1개의 군

집을 형성하였고, 남유럽국가인 이탈리아-스페인-포르투갈이 프랑스와 함께 1개의 군집을 형성하였다. 한편 유럽대륙국가인 오스트리아-벨기에-스위스가 1개의 군집을 형성하였고, 영어권 국가인 뉴질랜드와 영국이 1개의 군집을 형성한 반면 한국은 단독 군집을 형성하였다. 그 결과 군집계수 3.2를 중심으로 총 5개의

군집이 만들어졌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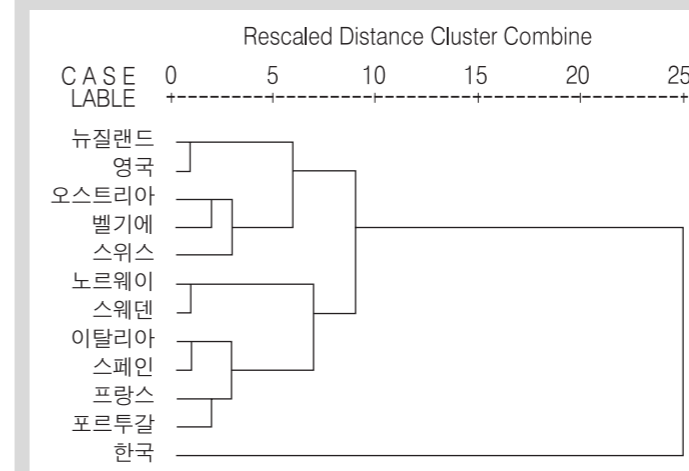
이러한 결과는 에스핑 안텔센의 복지국가 유형(1990)¹¹⁾과 상당히 유사하다. 에스핑 안텔센(1990)은 초기 저작에서 복지국가의 유형을 북유럽국가군, 유럽대륙 국가군, 영어권 국가군으로 구분하였고, 대표적인 국가로 스웨덴, 독일, 미국의 제도를 분석했다. 후속 연구(1999)¹²⁾에서 그는 남유럽 국가군과 동아시아 국가군을 포함하여 복지국가 유형화를 시도했으나 남유럽 국가군과 동아시아 국가군이 기존의 군집과 구분되는 군집을 형성하지는 않는다고 주장하였다. 그러나 본 연구에서는 남유럽 국가들이 하나의 군집을 형성하였고, 예외적으로 프랑스가 이들 군집에 포함되었다.

다음으로 각 유형별로 대표국가들을 선정하

여 가족정책 동기를 중심으로 방사형 그래프로 그려보았다. 한 축은 소득보장과 육아휴직을, 다른 한축은 보육과 유아교육이다. 즉 가족정책은 전통적인 가족을 유지하는 데 목적을 둔 소득보장제도와 맞벌이 가구의 가사노동과 시장노동 병행을 지원하는 데 목적을 둔 일-가족양립제도, 저출산을 극복하기 위한 목적으로 장려하는 보육정책과 인적자원투자의 성격이 강한 유아교육으로 구성된다. 각 클러스터별로 중요하게 생각하는 가족정책이 달라질 수도 있고,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모양을 가지기도 한다. 이는 또한 SOCX 데이터베이스의 가족급여 항목과도 일치한다. 즉 가족수당항목은 소득보장으로, 육아휴직항목은 일-가족양립으로, 아동주간보호항목은 보육과 유아교육으로 분리되었다.

[그림 2]에서 보듯이 각국의 가족정책의 동기는 매우 뚜렷한 차이를 보인다. 먼저 북유럽국가군의 노르웨이는 가족정책에 있어서 방사형 그래프에서 가장 균형잡힌 모습을 나타내고 있다. 즉 노르웨이의 가족정책은 유자녀 가족을 위한 소득보장제도와 유자녀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를 지속시키기 위한 일가족양립정책 지출 수준이 거의 유사하고, 출산장려정책 역시

그림 1. 클러스터 분석에 따른 덴드로그램 (2003년 기준)



자료: 고경환 외, 『2006년도 한국의 사회복지지출추계와 OECD 국가의 가족정책 비교』, 2008, p. 163.

11) Esping-Andersen, Social Foundations of Postindustrial Economics, Oxford University Press, 1999.

12) Esping-Andersen, Three Worlds of Welfare Capitalism, Princeton University Press, 1990.

중요한 가족정책의 동기가 되고 있다. 그러나 인적투자적 동기에서의 조기교육에 대한 투자는 상대적으로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탈리아는 노르웨이와 유사하게 가족정책의 고른 지출을 보여준다. 그러나 이탈리아는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가정생활 병행에 대한 지원이 다소 소극적이며 오히려 남성생계 부양자 중심의 소득보장제도에 대한 지출이 우세하다. 이러한 가족정책의 기초는 돌봄서비스에서도 그대로 나타나 어린 영아에 대한 보육에 대한 투자보다는 취학 전 아동을 대상으로 하는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의 비중이 높게 나타난다.

전반적으로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유사한 경향을 보이거나 가족정책을 구성하는 하위 제도에는 상당한 차이가 있다. 즉 이탈리아의 가족정책이 여러 가지 정책 동기들을 통합적으로 나타내는데 반해 오스트리아는 남성생계부양자 가구에 초점을 맞춘 가족정책의 선택이 대조적이다. 즉 오스트리아는 전형적인 유럽대륙국가군으로서 남성생계부양

자 가구에 대한 정책적 선호가 있으며 유자녀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의 투자가 매우 높은 반면 여성의 일-가족 양립에 대한 인센티브는 낮다. 가구내 여성 배우자는 시장노동보다 가정 내 돌봄노동이 장려되므로 보육에 대한 헌신보다는 유아교육에 대한 헌신이 더 높게 나타난다.

한편 뉴질랜드는 오스트리아와 매우 유사한 형태를 보여준다. 즉 뉴질랜드 역시 유자녀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제도가 근로인센티브의 하나로써 적극 장려되는 반면에 여성의 일과 가족생활을 위한 양립을 국가 차원에서 투자하기 보

다는 선택의 양상을 띤다. 또한 어린 영아에 대해서는 기관 중심의 보육보다는 가정보육에 대한 헌신이 높아 상대적으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높게 나타난다. 그러나 한국은 가족정책에 대한 투자가 매우 낮지만 특정 영역에 치우치지 않은 고른 형태로 나타난다.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방사형 그래프를 통한 각 유형별 대표국가들의 가족정책의 동기들은 상당부분 차이가 있다. 북유럽 국가인 노르웨이에서 가족정책은 소득보장제도와 일가족양립정책, 보육정책이 하나의 패키지로 제공되며, 오스트리아에서 가족정책은 1인생계부양자 가구를 중심으로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지만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와 유지에 대한 정책적 인센티브는 거의 없다. 따라서 어린 영아에 대한 돌봄은 가정 내 여성의 역할이며, 조기교육을 위해서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집중적으로 제공된다. 이는 시장주의적 성격을 띠는 영미권 국가에서도 유사하게 나타난다. 즉 영미권 국가에서 가족정책이란 유자녀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제도와 3-5세 유아에 대한 조기 교육정책으로 구성된다. 특이한 것은 남유럽국가군인데, 노르웨이와 패턴을 갖고 있으나 그 수준은 상대적으로 낮고, 소득보장과 유아교육에 대한 투자가 다소 높게 나타는 경향이 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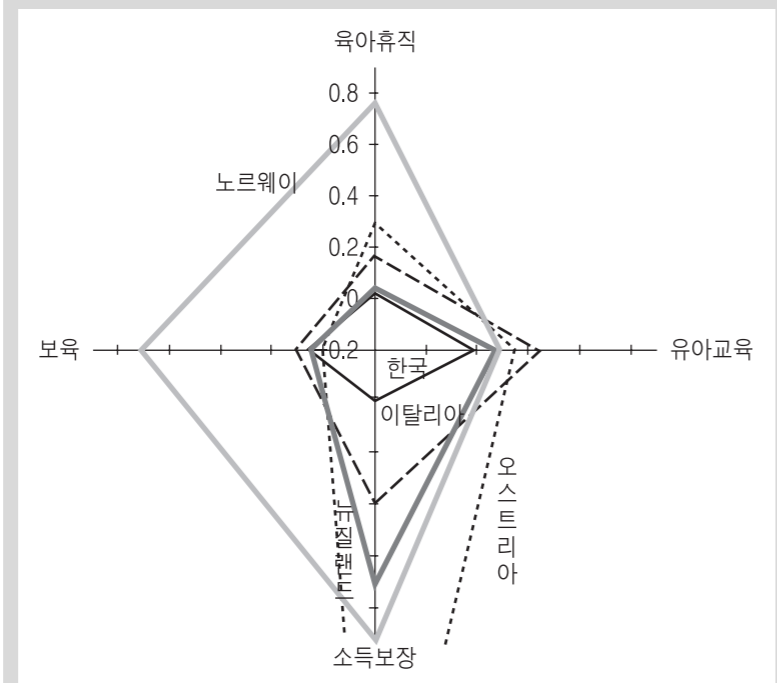
으로 수당형식을 취하는 직접적인 현금이전과 함께 소득공제 형식을 취하는 간접적인 현금이전인 조세급여를 포함한다. 먼저 직접적인 현금이전에 있어서는 북유럽국가인 노르웨이와 유럽대륙국가인 오스트리아가 보편적인 수당을 제공하는 데 반해 남유럽국가인 이탈리아와 영미권 국가인 뉴질랜드는 소득조사에 기초한 잔여적인 형태의 수당을 제공하고 있다. 반면에 한국은 가족의 소득을 보장하기 위한 현금이전 제도가 전혀 없고 한부모 가족 혹은 유공자가구 등에 취약계층에 대해서만 제한적으로 제공하고있다.

다음으로 조세를 통한 간접적인 현금급여는 뉴질랜드에서 가장 적극적으로 사용하고 있다. 뉴질랜드에서는 가구소득과 부모의 근로시간, 자녀의 연령과 수 등 가정이 처한 환경을 고려하여 급여액을 산정하고 있다. 이는 또한 tax credit(세액공제)의 형태로 제공되고 있어 미국, 영국, 캐나다와 함께 적극적인 조세급여를 도입하고 있는 특징이 있다. 반면에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 한국은 소극적인 세금공제의 형태를 취한다.

각국에서 이러한 소득보장제도를 구성할 때 정책적 선택의 차이 역시 복지국가의 유형화에 따른 차이를 보여준다. 즉 영미권 국가인 뉴질랜드는 자산조사와 욕구를 근거로 차등 지원하는데 반해 사민주의 국가와 유럽대륙국가는 가족에 대한 보편적인 수당이 제공된다.

마지막으로 소득보장제도가 1인 생계부양자 모델에 기초한 것인지 맞벌이 부부에 기초한 것인지를 살펴보기 위해서 2자녀가 있는 4인 가족의 1인 생계부양자 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그림 2. 유형별 대표국가의 가족정책 동기에 대한 방사형 그래프



주: 방사형 그래프에서는 각 영역별 지출수준이 비슷하여야 국가 간 비교가 용이함. 오스트리아의 경우 소득보장부분의 지출이 상대적으로 높아(2.15) 눈금의 최대치를 평균수준으로 설정(0.8)하여 도시함으로써 소득보장 축(y)에 점점이 도시되지 않음. 또한 각 영역별 지출수준이 상대적으로 낮은 한국을 도시하기 위해 최소값을 0보다 작은 -0.2로 설정함.
 자료: OECD, SOCX Database의 자료 재분석

조세격차를 살펴보았다. 즉 평균임금 100%의 소득을 버는 1인 생계 부양자의 과세와 평균임금 100%와 67%의 소득을 가지는 맞벌이 가족의 조세격차를 비교함으로써 각국이 조세정책을 통해 지향하는 가족이데올로기를 살펴볼 수 있다.

평균 임금 100%의 소득을 가지는 1인 부양자 가구가 부담하는 조세는 노르웨이, 오스트리아가 20% 내외를 나타내며 가장 높고, 다음으로 이탈리아와 한국이 10% 내외를 나타내며 중간 수준을 보이고, 뉴질랜드는 2.8%로 가장 낮다. 평균 임금 100%의 소득을 가지는 주 부양자와 평균임금 67%의 임금을 가지는 부부양자가 있는 맞벌이 가족의 경우에는 뉴질랜드가 20%를 넘어 가장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에 한국은 2.1%로 가장 낮은 조세를 부담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국가별로 1인 생계부양자가구와 맞벌이 가구의 조세격차를 살펴보면 <표 5>와 같다. 노르웨이와 오스트리아, 한국에서는 1인 생계부양자 가구의 조세가 맞벌이 가구의 조세보다 더 높은 반면에 이탈리아, 뉴질랜드에서는 맞벌이 가구의 조세가 더 높다. 따라서 노르웨이, 오스트리아, 한국에서는 맞벌이 가구를 더 선호하는 가하면, 이탈리아와 뉴질랜드에서는 1인 생계부양자 가구를 더 선호한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특히 뉴질랜드에서 이러한 조세격차는 다른 국가에 비해서 매우 크다. 또한 과세단위가 노르웨이를 제외한 모든 국가에서 부부를 분리해서 과

세하고 있으나 노르웨이에서는 조건부로 분리하고 있다.

2) 일-가족양립제도

노르웨이는 출산휴가 및 육아휴직을 포함하여 42주를 사용할 경우 임금대체율 100%, 53주를 이용할 경우 임금의 80%를 보장해줌으로써 이용자의 자유로운 선택을 유도하였다. 그러나 휴가기간은 오스트리아나 이탈리아, 한국에 비해서 매우 짧다. 그 이유는 일하는 어머니가 많아 영아를 위한 보육시설이 발달했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스트리아와 이탈리아는 출산 및 육아휴직의 기간이 상대적으로 길지만 육아휴직급여의 임금대체율은 매우 낮다. 이들 국가에서는 어린 영아의 경우 가정내에서 보육하거나 비공식적 보육을 이용하는 경우가 많아 0~2세를 위한 보육시설이 열악한 것과 관련 있다. 한편 뉴질랜드는 대부분의 영미권 국가들처럼 육아휴직의 기간은 짧고, 무급이다.

노르웨이는 세계 최초로 육아휴직에 대한 '부의 할당제(4주)'가 도입(1993년)되었는데, 그 후 노르웨이 남성의 육아휴직 이용률은 1993년 4%에서 1995년 70%로 증가하였다(윤홍식, 2007)¹³⁾. 뉴질랜드 역시 아버지 휴가가 있으나 무급이므로 실제로 사용하는 비중은 높지 않다. 주된 생계원인 아버지가 휴가를 사용할 경우 기간은 길어지나 임금대체율은 낮아 소득보장이 제한되기 때문이다. 반면에 오스트리아

표 5. 주요국가의 소득보장제도 비교

	직접적인 현금급여(2005)			간접적인 현금급여(2005)		조세격차(2007)		
	급여명	대상	급여	급여 종류	대상선정기준/급여수준	과세 단위	1인부양자 100%	맞벌이 100~67%
노르웨이	가족수당	보편적	정액급여 (134유로/인)	아동양육비용의 공제	소득수준에 따라 차등 25000/30000 크로네	조건부	21.5	20.2
	자녀양육수당	보편적	기관이용여부, 기관이용시간에 따라 차등지급					
	한부모 가정수당	보편적	정액급여					
오스트리아	가족수당 family support	보편적	자녀수와 나이에 따라 차등급여	자녀세액공제 child tax credit	보편적/ 1인당 610.80유로	분리	19.8	13.2
	자녀양육수당	보편적	가장어린자녀를 기준으로 36개월까지 14.53유로/일					
이탈리아	부녀자수당 maternity allowance	소득조사, 아동수	소득구간별로 차등급여	child tax credit	보편적/ 자녀수와 소득수준에 따라 결정	분리	12.5	13.7
뉴질랜드	가족수당	소득조사	연령과 순서에 따라 차등급여	가족세액공제 family tax credit	저소득층	분리	2.8	20.6
				근로연계세액공제 in-work tax credit	저소득층			
				부모세액공제 parental tax credit	근로자			
한국	없음	없음	없음	인적공제/ 교육비공제 EITC	소득수준, 자녀수에 따라 차등 자산조사	분리	9.5	2.1

자료: 정연택, "가족정책의 국제비교-동아시아와 남유럽 복지체제 비교의 시각에서", 『사회복지연구』, 2007; 전병목·조찬래, 『주요국의 자녀세액공제와 시사점』, 2006; OECD, Taxing Wages 2006~2007, 2007.

는 아버지가 자녀의 출산이나 육아를 위해 사용하는 부성휴가가 없으며, 한국은 자녀의 출산시 이용하는 '아버지 출산휴가'가 2008년부터 의 무적으로 도입되었으나 무급이다.

13) 윤홍식, "노르딕 4개국 가족정책의 보편성과 상이성: 아동보육과 돌봄 관련 휴가 정책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 59권 제 2호, 2007, pp. 327~354.

표 6. 주요국가의 일-가족양립제도 비교(2003년 기준)

	제 도	기 간	급 여(US \$)
노르웨이	출산휴가, 육아휴직, 부성휴가	42주 혹은 53주 이 중 30일은 아버지가 사용하며, 사용하지 않을 경우 소실됨	42주: 임금대체율의 100% 53주: 임금대체율의 80% (단, 소득의 상한성 있음)
오스트리아	출산휴가 육아휴직	16주 30~36개월 ECEC 의무에 의해 부모가 휴가를 공유할 경우 36개월까지 가능함	임금대체율 100% 월 426 EUR (저소득층은 181 EUR 추가로 보충)
이탈리아	출산휴가 육아휴직	21주 10~11개월 아버지가 3개월 사용시 11개월까지 가능	임금대체율 80% (고용주 부담) 임금대체율 30% (고용주 부담)
뉴질랜드	출산휴가	14주(반드시 연속적으로) 최소 8주는 반드시 출산 후에 써야 함	임금대체율 100%
	육아휴직(부성휴가 포함)	2주(배우자 혹은 동거인)	무급
	특별 휴가	10일간 임신한 산모의 의사면담 등을 위한 급여	무급
	휴가의 연장	52주 출산휴가를 제외하고 자격이 있는 부부간에 공유할 수 있음	무급
한국	출산휴가 육아휴직	3개월 출산휴가 포함해서 1년	임금대체율 100% 정액 USD 500/월

주: 한국의 아버지 출산휴가는 2008년에 도입되어 표에는 반영되지 않음.
자료: OECD, *Babies and Bosses*, 2005; OECD, *Starting Strong II*, 2006.

3) 유아교육 · 보육 서비스

마지막으로 유아교육과 보육서비스에 대해 국가별 제도를 살펴보면 아래의 <표 6>에서와 같이 노르웨이, 뉴질랜드는 일원화된 형태로 교육부에서 운영하고, 오스트리아, 이탈리아, 한국은 이원화된 체제를 유지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일원화된 국가의 경우 유아교육 · 보육에 대한 투자는 연령별로 이루어지거나 기간유형

별(반일제 vs 종일제)로 이루어진다는 공통점을 가지고 있으나 노르웨이는 보육의 성격이 강해 어린 영아부터 시설을 이용하며 종일제 시설이 보편화된 반면 뉴질랜드는 유치원을 중심으로 운영되다가 최근 보육과 유아교육을 동시에 제공하는 보육교육센터의 비율이 높아지고 있다.

이원화된 유아교육 · 보육체계를 가진 국가들은 대부분 가족내 돌봄 서비스의 주된 제공자가 여성이 된다. 즉 남성이 생계를 부양하는 동

표 7. 주요국가의 유아교육 · 보육서비스(Early Childhood Education & Care Service) 비교(2005년 기준)

국 가	부처형태	유형 및 특징	의무교육	
노르웨이	일원화 (교육부)	- 공사구분없이 가정보육시설을 포함하여 유치원으로 일원화 - 대부분 공립유치원이며, 무료임	6세	
오스트리아	병렬 이원화	보육	- 인증받은 센터와 FDC 등에서는 0~3세 영아를, 보조적인 기관과 장기간 보육은 연령에 상관없음	6세
		유아교육	- 유치원과 reception classes에서 3~5세 교육 담당	
이탈리아	연령별 이원화	보육	- 어린 아동의 대부분은 가족내에서 보육되거나 다른 비공식적인 보육을 받고 있음 - Asili nidi(creches): 0~3세 아동의 18.7% 이용	6세
		유아교육	- scuola dell'infanzia: 3~5세의 대부분이 이용하나 지역에 따라 다름	
뉴질랜드	일원화 (교육부)	- 지역중심으로 비영리기관에서 운영하며, 학부모의 기부 또는 자발적인 참여가 활발한 것이 특징 - 유치원: 주로 비영리기관에서 운영, 만 3~4세 대상, 17.3% - 보육교육센터: 가장 많이 이용되는 시설로 만 0~4세 대상, 48.9%. 영리기관과 비영리기관이 절반정도씩 차지함 - 그 외 놀이센터, 가정서비스, 원거리학교, Kohanga Reo(마오리주민을 위한 서비스) 등이 있음	5세	
한국	병렬 이원화	보육	- 영아의 경우 대부분 가족과 비공식적인 보육을 이용하나 10% 정도는 보육시설을 이용 - 나머지 연령은 시설에 상관없이 선택할 수 있음	6세
		유아교육	- 주로 3~5세 아동이 이용함 - 보육 및 유아교육 기관 대신 학원을 선택한 경우도 있음	

자료: OECD, *Starting Strong II*, 2006, pp. 76~77.

안 여성이 자녀 육아를 담당하거나 일하는 여성이라도 어린 영아에 대해서는 육아휴직을 사용하여 자녀를 직접 길러야 한다는 가치가 지배적이다.

6. 한국에의 함의

본 연구에서는 가족정책의 하위영역들과 정책적 동기를 연계한 분석틀을 중심으로 OECD

23개 국가의 가족정책 유형화를 시도하였다. 그 결과는 에스핑 안델센이 지적한 복지국가 유형화와 거의 유사한 형태로 나타났지만, 남유럽 국가와 한국이 독립적인 군집을 형성한다는 측면에서는 차이가 있다. 또한 가족정책을 형성하는 하위 영역들을 제도적으로 비교한 결과, 한국은 다른 국가들에 비해 가족정책에 대한 지출 수준이 매우 낮으며, 포괄적인 가족정책이 형성되지 않았고, 특정 하위 제도가 가족정책으로 혼동된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

이러한 분석결과가 한국에 주는 시사점은 첫째, 한국 가족정책 수립의 포괄성이다. 가족정책이라는 포괄적인 관점이 배제된 채 유사한 제도들이 서로 다른 목적으로 운용된 결과 각 제도들의 효과가 낮게 나타났다. 즉 출산장려정책에 대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출산율은 증가세를 보이지 않으며, 일가족양립정책의 일환으로 시행된 육아휴직에도 불구하고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율의 증가는 미비하다. 이는 이미 선진국에서 논의되었듯이 한 두개의 정책을 분절적으로 펼쳐서는 저출산 고령사회문제와 기혼 여성의 노동시장 참여 촉진 등 가족이 안고 있는 현안 문제들을 효과적으로 풀 수 없다. 따라서 모든 하위 구성요소들을 아우르는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수립이 필요할 때이다. 이 때 포괄적인 가족정책의 수립은 전통적인 가족에 대한 소득보장과 맞벌이 가구에 대한 지원, 출산장려와 인적자본에의 투자 등을 모두 포함해야한다.

둘째, 한국 가족정책이 지향해야하는 방향성의 설정이다. 그동안의 연구들은 한국과 상당한 사회문화적 거리가 있는 선진국의 우수한 제도들의 도입을 주장하였다. 그러나 선진국의 제도가 한국에서 제대로 정착하기란 매우 힘든 일이다. 경제여건과 사회적인 가치, 문화적인 풍토가 다르기 때문이다. 본 연구에서는 몇 개의 가족유형을 구분하고 각 유형을 대표하는 국가들

의 가족정책과 하위 영역들을 소개함으로써 다양한 정책적 대안을 모색하고자 하였다. 즉 북유럽형의 가족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가족의 소득보장을 위해 새로운 제도가 도입되어야 하고, 전체적인 가족정책의 지출 수준을 증가시켜야 한다. 반면에 자유주의 가족정책을 수립하고자 한다면 다양한 세액공제제도를 근로장려세제와 연계하여 가족의 상황에 적합한 소득보장체계를 구축하여야 한다. 즉 포괄적인 가족정책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북유럽식의 보편적인 아동수당을 도입할 것인지, 자유주의식의 Child Tax Credit을 도입하여 '근로장려세제(EITC)'와 병행할 것인지 선택해야 함을 시사하고 있다.

본 연구의 한계점으로는 먼저 OECD 23개국에 대한 데이터의 부족으로 실제적으로 분석한 국가가 12개국에 불과했던 것은 차후 연구를 통해 보완되어야 할 점이다. 다음으로 각 유형별 국가들의 제도를 비교할 때 그 기준은 선행연구에서 대체로 소개되지 않았던 국가들을 중심으로 작성하였다. 물론 각국에 대한 가족정책의 소개 자체로도 의미가 있으나 대부분 널리 알려진 국가들과의 유사점과 차이점을 통해 클러스터 내의 공통적인 특성이나 동일 클러스터임에도 불구하고 구분되는 차이에 대한 상세한 연구들은 미진하다. 이에 대한 연구는 앞으로의 과제로 남겨두고자 한다. 